

책임자

금융정책실  
김해식 실장(3775-9041)

작성자

백영화 연구위원(3775-9048)

홍보담당

최원 선임연구원(3775-9057)

총 5매

## 「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」 심포지엄 개최

### “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”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과 한국보험법학회(회장 김선정)는 8월 27일 (월) 오후 6시 30분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『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』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함
  - 이번 심포지엄은,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가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,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함
  -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 모집 행위와 관련된 국내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를 분석하고, 일본 등 해외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소개하였으며, 이를 토대로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 나아가 이러한 기준을 법규나 감독당국 지침, 유권해석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
-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보험 모집은 보험업에 있어 보험회사 및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어떠한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업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여

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“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”고 강조함

## <주제 :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>

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

###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

-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하여 원론적인 정의 규정\*만 두고 있을 뿐,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음
  - \*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은 “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(보험업법 제2조 제12호)
  - 관례나 유권해석 사례들을 통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일부 기준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들이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
  - 이에, 가망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인지, 어떤 행위는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소개·안내 등의 행위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함
  -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**형사처벌** 또는 **행정제재**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
    -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,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
  - 따라서, **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**가 있을 것임
-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**행위의 실질, 규제의 필요성, 법체계와의 정합성**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
  - 행위의 실질에 있어, **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** 할 것임
    - 관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“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·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”하여야 함(서울행정법원 2015. 5. 28. 선고

2013구합62367 판결)

-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서, 만약 해당 행위가 모집 자격 있는 자에 의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**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**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
  - 보험업법에서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입법 취지(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보호)를 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험 모집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
-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,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및 기타 모집과 구분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**규정의 체계 및 내용**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  - 예컨대 보험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비교·공시 행위는 보험 모집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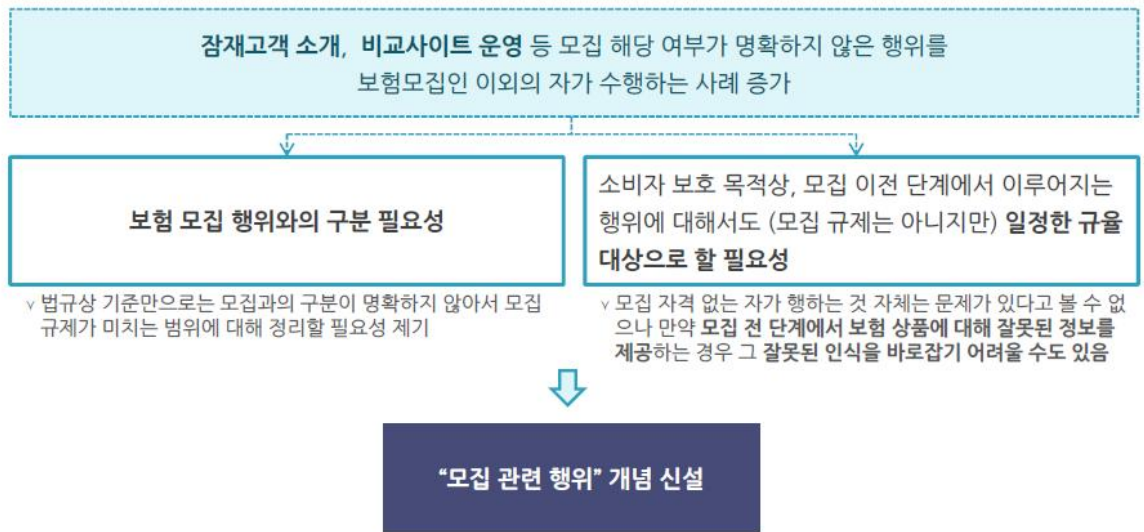
-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, 보험 모집에 해당할 수 있는 핵심 유형으로 ①**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**, ②**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**, ③**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**로서 **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** 제안해볼 수 있음
- 또한 이와 관련하여,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**특정 보험 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**에 대한 경우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
  - 만약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설명이나 권유라면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

### 일본에서는 “모집 관련 행위”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

- 보험 모집 행위와 모집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, 일본, 미국, 영국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
- 특히 일본의 경우 2015년 금융청 감독지침 개정(2016. 5. 시행)을 통해 “**모집 관련 행위**”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함
  - “모집 관련 행위”란 **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함**

-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**잠재고객 소개나 비교사이트 운영 등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행위들이** 널리 행해지고 있어서 모집 규제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, 또한 모집 자격 없는 자가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**일정한 규율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**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임

<그림 1> 일본에서의“모집 관련 행위”개념 도입 배경



- “모집 관련 행위”는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집 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, 모집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는 없음
- 다만,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**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자를 관리·감독할 의무**를 부과하여,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로서는 모집 관련 행위자가 보험 모집을 수행하지는 않는지, 보험 상품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나 부적절한 평가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관리·감독해야 함
- 일본 금융청 감독지침에서는 **보험 상품의 추천·설명 없이 단지 잠재고객의 정보를 보험회사나 모집인에게 제공할 뿐인 행위,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 중 보험회사나 모집인으로부터의 정보를 옮겨 실는 것에 그치는 행위**를 모집 관련 행위의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
<http://www.kiri.or.kr>